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8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춘례, 경만선, 문병훈,
안광석, 오한아, 박기재,
노승재, 최영주, 황규복,
김기덕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는 교육안전의 범위로 보건안전을 포함하고 있으며, 보건안전에는 ‘약물 오남용 예방’을 규정하고 있는바, 최근 「학교보건법」 상 학생의 보건관리 규정이 기존 ‘약물 오남용 예방’에서 ‘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’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의 범위를 “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,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”에서 “질병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,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”으로 변경하고자 함.(안 제5조제5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보건법」

「화학물질관리법」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」

「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」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약물오남용”을 “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보건안전 : 질병과 <u>약물오남용</u> 예방,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</p> <p>6. ~ 8. (생 략)</p>	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마약류를 포</u> <u>함한 약물 오남용</u> ----- -----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